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45

발의연월일: 2020. 7. 24.

발 의 자: 추경호·박성중·강대식

김상훈・윤재옥・김희국

곽상도 · 최형두 · 김선교

권영세 · 홍준표 의원

(11일)

제안이유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인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상승과 함께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저금리 기조와 과잉 유동성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특히 가파르게 진행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중산층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규정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법적 예측성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 세부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8조제1항).
- 나. 1세대 1주택자의 중복적용할 수 있는 공제율 최대 합계 범위를 현행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함(안 제9조제5항).
- 다.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0분의 5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100분의 80, 만 70세 이상은 100분의 90의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9조제6항).
- 라.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0분의 3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00분의 50, 15년 이상은 100분의 80의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9조제7항).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5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80
만 70세 이상	100분의 90

①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50
15년 이상	100분의 8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
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제8조(과세표준)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	
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	
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	
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	
주택자(이하"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	
액]에서 <u>6억원</u> 을 공제한 금액	<u>9억원</u>
에 <u>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u>	<u>100분의 80</u>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	
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u>정시장가액비율</u> 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	
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④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5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	

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 동산세액은 제1항·제3항 및 제 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 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 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 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 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 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 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 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u>100분</u>
90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u>연</u> 령	<u>공 제 율</u>
만 60세 이상 만 65세	100분의 10
<u>미만</u>	100년 -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100 = 01 00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 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 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 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 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 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 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 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보유기간	<u>공제율</u>
5년 이상 10년	100분의 20
<u>이만</u>	<u>100년의 20</u>
10년 이상 15년	100 🗷 01 40
<u>미만</u>	<u>100분의 40</u>
<u>15년 이상</u>	100분의 50

<u>연</u> 령	<u>공 제 율</u>
<u>만 60세 이상 만 65세</u> 미만	100분의 50
<u>만 65세 이상 만 70세</u> 미만	100분의 80
만 70세 이상	100분의 9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 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 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 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 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 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 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 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보유기간	<u>공제율</u>
<u>5년 이상 10년</u>	<u>100분의 30</u>
<u>미만</u>	
<u>10년 이상 15년</u>	100분의 50
<u>미만</u>	<u> </u>
<u>15년 이상</u>	<u>100분의 80</u>